

#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10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4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10. 1~10. 31)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10.2	배선기구	전화	중국에 자체 공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PL법 관련 사고시 배상하면 나중에 중국 공장에서 책임져야 하는가?	계약서 작성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10.9	전열보오드	내방	주로 화재의 원인이 부품에 있는데, 보상책임을 안정기 제조업체에 전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전 계약서 작성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 것
10.12	주서기	전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소비자 임의로 개조한 다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이 경우는 PL법에 저촉이 안됨
10.13	전 선	내방	- 지시, 경고문구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 exporter에 대한 구상권 획득절차	1. 사전상의(PL법 영문판) 2. 계약서 작성 3. LC상에 명기
10.19	전기매트	내방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사고발생시 보상 해주고, 수출자에 대한 구상건을 계약서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문구를 완전하고 간략하게 만들고 싶음	계약서 작성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협회 차원에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 요령 검토 중
10.20	주서기	내방	사용자의 부주위, 오사용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나?	과실상계 적용
10.24	전기토스터	내방	지시/경고 문구 작성의 애로사항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검토 필요	부분적으로 품목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표시사항 검토 중
10.27	정수기	내방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 합니다.